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70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김소희·조경태·안철수

조정훈 • 김예지 • 김선교

우재준 • 박덕흠 • 김대식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13(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2조의13(주차장의 신ㆍ재생에
	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
	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
	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
	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
	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u>수 있다.</u>